

의안번호	2126506
의 퇴 인	신현영 의원
회 답 일	2024. 2. 22.
추계번호	24B0149

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) 제1항	근로복지(임금·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)정책은 근로자의 경제·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,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<u>건강 보호</u> 를 목적으로 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9조(기본계획의 수립) 제2항	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2.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3. <u>근로자 건강의 보호 및 증진</u> 에 관한 사항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(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) 제1항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나, 근로복지정책에 관한 선언적인 내용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2	안 제9조(기본계획의 수립) 제2항	미대상: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2. 상세 사유

- (안 제3조제1항) 개정안은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고용노동부는 현행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3조에 근거하여 기업복지활성화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, 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큼

- 기업복지활성화지원 사업은 근로자복지지원 사업¹⁾의 내역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및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 요인의 해소를 위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(EAP)을 제공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,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

[표 1] 현행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추진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 (내역사업)	2019 결산	2020 결산	2021 결산	2022 결산	2023 예산액	2024 예산액
근로자복지지원 (기업복지활성화지원)	1,954 (1,450)	1,691 (1,239)	1,646 (1,239)	1,646 (1,239)	1,564 (1,157)	1,893 (1,151)

자료: 고용노동부

- 개정안은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근로자의 건강 보호가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므로, 추가재정소요는 기존 사업의 현행 유지 및 확대 여부와 및 장래 추진될 신규사업의 규모에 따라 결정됨
 - 근로복지정책 기본원칙의 변경될 경우 기추진 중인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관련한 사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,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관련한 신규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
 - 그러나 현시점에서 장래의 발생할 기존 사업의 확대 규모와 신규사업의 규모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
 - 따라서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장래의 발생할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
- (안 제9조제2항) 고용노동부는 현행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9조에 근거하여 5년 주기로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를 위해 2021년 고용노동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음
- 개정안은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의 내용에 근로자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포함하는 내용이므로, 본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추가재정 없이 기존 행정력 및 재정의 범위 내에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
1) 코드: 3061-301

[표 2] 현행 「근로기준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용역 추진 현황

연구과제명	소요예산	계약기간	계약상대자
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	4,000만원	2021.5.1~11.9	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

자료: 고용노동부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이유미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